

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51 호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고 흥 군 의 회 의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고흥군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열린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의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 ~ 제4조)
- 교류협력 관련 사전검토, 사전교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7조)
- 자매결연 체결,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제10조)
-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2024. 12. 10. ~ 2024. 12. 16.(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 방문, 홈페이지 어느 방법으로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061-830-5032, 팩스: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

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
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교류협력 기관 상호 간 합의된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 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1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흥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_____

○ 전 화 번 호: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